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80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8010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5360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3. 29.

판결선고 2024. 4. 1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5360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21. 8.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7. 16. 이 법원 2021가단528204호로 C에 대하여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법원은 2021. 9. 17.자 2021카단52720 결정으로 C의 D은행,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에 대한 예금채권, 신용카드 판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22. 5. 27. 선고 2021가단528204 판결로 C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금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다. C은 2009. 11. 19. 별지 목록 기재 1층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900,000원에 임차한 후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21. 10. 20. 폐업하였다.

라. C의 딸인 피고는 2021. 8. 15. 임대인 K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18.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C은 K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고,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C은 2021. 8. 15.경 부동산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L에 대한 신용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광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딸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2021. 8. 15. 체결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은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 대하여 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입의 원천이 되는 주요한 재산인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딸인 피고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되고, 앞서 본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 시기,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C은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2016. 12. 28.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20. 3. 11. C의 채권자 M의 딸인 J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C에게 2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위 채권을 대물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28. C에게 10,000,000원을, 2020. 3. 11. J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와 C은 모녀지간으로 위 20,000,000원 외에도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16. 12. 28. C에게 입금한

10,000,000원을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3. 11. J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이 C의 채권자 M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고 있다)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이화진, 판사 김다운

별지